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시설 관리 및 활용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5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4급 1명)하여 한시정원으로 두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 공연시설의 건립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

구관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을 각각 감축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56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문화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정책실 소관 국립 복합문화시설 조성방안 수립 및 조정
2.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건립의 지원
3.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구 충남도청·경북도청 등의 문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에 관한 사항
6. 청와대 운영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제74조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85”를 “677”로 하고, 별정직 계 “5”를 “4”로 하며,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4”를 “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77”을 “670”으
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06”을 “59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840”을 “1,83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14”를 “1,504”
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64”를 “1,454”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제74조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2]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73조의2제4항 및 제73조의3제4항 관련)

1.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8
일반직 계	7
고위공무원단	1
4급 이하	6
경찰공무원 계	1
경감 이하	1

2. 문화시설기획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이하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5. (생략) 56. <u>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u> 의 운영 지원 57. (생략)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5. (현행과 같음) 56. <u>국가도서관위원회</u> ----- ----- 57.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u>2023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 ⑥ (생략) <신설>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 ----- ----- --- <u>2025년 12월 31일</u>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① <u>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u> ② <u>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u>

제74조(한시정원)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4년 2월 29일까지</u>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다. ③ 문화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문화예술정책실 소관 국립 복합문화시설 조성 방안 수립 및 조정</u> 2. <u>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건립의 지원</u> 3. <u>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조성</u> 에 관한 사항 4. <u>구 충남도청·경북도청 등의 문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u> 5. <u>문화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에 관한 사항</u> 6. <u>청와대 운영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u> ④ <u>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u> ⑤ <u>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u>
제74조(한시정원) ----- ----- ----- --- <u>2026년 2월 28일까지</u> ----- ----- ----- -----.	

신·구정원대비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7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685</u>	• <u>677</u>	-8
별정직 계	• <u>5</u>	• <u>4</u>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일반직 계	• <u>4</u> <u>677</u>	• <u>3</u> <u>670</u>	-1 -7
3급 또는 4급 이하	• <u>606</u>	• <u>599</u>	-7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840</u>	• <u>1,830</u>	-10
일반직 계	• <u>1,514</u>	• <u>1,504</u>	-10
3급 또는 4급 이하	• <u>1,464</u>	• <u>1,454</u>	-10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5]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74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제74조 · · ·	· <u>관련 한시 정원(존속 기한: 202 4년 2월 2 9일)</u> · ·	· <u>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6 년 2월 28 일)</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2